

#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

제정 2012. 05. 04.  
제2차 개정 2019. 06. 25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환경주의를 추구하며, 인류공동체의 번영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'상지대학교 사회봉사단'(이하 "사회봉사단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소재지)** 사회봉사단은 상지대학교 안에 둔다.

**제3조(주관부서)** 사회봉사단은 **학생행복처**를 주관부서로 한다. (개정 2019.06.25)

**제4조(사업)**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봉사활동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· 시행
2.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· 시행
3. 사회봉사활동의 조직 · 지원 및 관리
4. 사회봉사관련 동아리 지원
5. 사회봉사에 관한 대외협력 및 연락조정
6. 국제봉사활동의 개발 · 지원
7. 사회봉사 사례발표 · 유공자 포상 및 소식지 발간
8. 기타 사회봉사에 부수된 사무

## 제2장 조직

**제5조(명예단장)** ① 사회봉사단에는 명예단장을 둔다.

② 총장은 임기 중 사회봉사단의 명예단장이 된다.

**제6조(단장)** ① 사회봉사단에는 단장을 두고, 사회봉사단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, 교원이 단장인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행정실)** 사회봉사단에는 정규직원 또는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① 사회봉사단의 운영 및 심의사항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**학생행복처장**, 사회봉사단장, **학생행복팀장**을 당연직으로 하고, 기타총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회봉사단장이 된다. (개정 2019.06.25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 기간으로 한다.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봉사단 운영의 기본방침
2. 사회봉사단 관련 규정 등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사회봉사단 활동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
4. 사회봉사단 유관기관과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5. 사회봉사단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(신설 2016.06.21)
6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(항 변경 및 개정 2016.06.21)

**제10조(회의)** 회의는 사안 발생 시 단장이 요청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해당 사안을 의결한다.

## 제4장 정보의 보호 및 열람

**제11조(평가주기/활용)** 사회봉사단 만족도 주사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사회봉사단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한다.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. (조 신설 2016.06.21)

**제12조(정보관리)** ① 사회봉사단 이용자는 자신의 상담과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할 권리, 자신의 기록 정보에 대한 알 권리,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,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사회봉사단 이용자가 기록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할 수 있다. 다만, 사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인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)

## 제5장 보칙

**제13조(규정개정)**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 (조 변경 2016.06.21)

**제14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조 변경 2016.06.21)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657, 2012.5.4)

이 규정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498, 2016.06.21)

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